



부록

토론 요약문
참가자 프로필

토론 요약문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2010년 10월 21일

서울 고궁박물관 대강당

2010년 10월 21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다.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와 다수의 옵서버들이 본 회의에 참석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적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였다.

최태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획이사과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는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통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 이어서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우선, 무형문화유산을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통문화자원과 같은 포괄적 개념에서 그 지적재산권 보호 논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국제적으로 기존 지적재산권 체제의 수정 또는 새로운 제도 *sui generis system*의 도입이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조사 및 기록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아울러, 개인 혹은 방송 관련 기관에 의한 보유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

드라인이나 법적 규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시작된 본 회의는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논의의 동향, 2부에서는 쟁점과 과제, 그리고 3부에서는 정보화 이슈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 1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국내외 동향

제 1부는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내외 논의 동향을 다룬 발표문에 대하여,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발언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Safeguarding*의 법적 보호 *Protection*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성과 동시에 날마다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현대성을 갖는다. 이것은 무형문화유산의 대부분이 ‘공유영역 *public domain*’에 해당하지만 개량된 부분은 ‘사적영역 *private domain*’으로 귀결되는 이유다. 공사(公私)영역이 동시에 공존하는 무형문화유산을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김병일 교수는 다음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권리자의 특징이 없으며, 둘째 이익을 공유할 수혜자가 불분명하고, 셋째 이용된 유산의 남용과 왜곡을 막는 장치 *rule*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세가지 사항은 무형문화유산이 보호 *safeguarding*에서 또 다른 보호 *protection*로 가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를 위해 상기 사항이 치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사회의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대한 전망

김용구 사무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를 중심으로한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독자적 보호 체계 구축으로 귀결될 것인지 혹은 기존 지적재산권법 틀에서 보호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주문하였다. 또한 독자적 보호 체계가 정립된다면 그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예

측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오기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정부 간위원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독자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미 기존의 지적재산권 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은 지적재산권 틀을 벗어난, 새로운 규범을 지향하고 있으며 자국법 내에서 수용을 유도하면서 강제성이 없는 모델법의 형태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용 소장은 기초발제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 체제의 내재적 한계 극복이 필요하며, 머지않은 장래에 기존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의 수정 내지 보완 또는 새로운 제도 *sui generis system*의 도입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전에 적극적인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형문화유산, 전통문화표현물, 전통지식의 개념적 논의

김병일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은 유전자원과 관계된 '협의를 전통지식'과 민간 전승물의 표현으로 대변되는 '광의의 전통지식' 개념을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 最廣義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전통지식의 개념이 민간전승물 및 무형문화유산의 그것과 중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조약들이 국내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덧붙여 김용구 사무관은 무형문화유산이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전통지식이 지식의 본질을 의미한다면 전통문화표현물은 그것의 성과물로 보여 지는데, 이로 인해 각각이 특허권과 저작권으로 연결되는 이원적 정책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일원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과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 간의 관계 정립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양대승 한국지적재산권위원회 부연구위원은 이 세가지 개념을 표리관계로 보기 보다는 서로 다른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 예시적으로, 1982년 모델규정 *Model Provisions*을 살펴보면, 현재 논의 과정에서 변화되어 사물 *production*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전통문화표현물을 사물로 보기보다는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신지식재산, 전통문화표현물, 전통지식에 대한 논의

동 세션에서는 국내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지식재산과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신지식재산은 경제, 사회, 문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지식재산이 확장된 개념으로 과학기술, 상표, 의장 등이 주된 유형으로 대변된다. 이에 반해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은 개도국이 자국의 전통문화와 토착민 문화를 지식재산권측면에서 방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김용구 사무관은 이와 같이 논의의 출발점과 그 계보가 다른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을 신지식재산의 틀에서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정용익 국무총리실 지식전략기반 팀장은 지적한 바와 같이 신지식재산권과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은 논의의 출발점이 다른데 현 시점에 와서 통합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의는 결국 사회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로 귀결되며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가 통일된 의견으로 무엇을 택할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 부처와 관계기관들의 협의와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 2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쟁점과 과제

제 2부는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동 세션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와 당면 과제들이 제기되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호주, 인도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대표 사례로 유네스코 목록 등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재산권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지적재산권법상 실질적인 보호 대상인 공동체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아래는 동 세션 발표에 대하여, 김형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와 박원모 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의 토론 발언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과 데이터베이스 방안

발표에서 육소영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을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바 있다. 즉, 구축된 데이터로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을 유지하고 이에 새롭게 가미된 창작물도 지적재산권법 상으로 보호를 인정하며, 이때 후자에서 발생한 이익은 데이터에 기록된 보유자와 공유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김형진 변호사는 제시된 대안은 디지털콘텐츠저작권법과 충돌이 예상된다는데, 데이터베이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권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익의 일부를 보유자에게 반환한다면 반발이 예상되는바, 수익의 일부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하여, 육 교수는 이익 공유는 그 범위와 방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정부에서 이익 공유를 정책적 방침으로 채택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익 공유는 이뤄질 것이며 본 견해는 그에 대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하나의 안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원모 팀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방법으로 기존의 방식인 목록작성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결과들을 발표자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법리적 관점에서 의견을 주문했다. 이에 육 교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등록할 때, 목록작성 등으로 작성된 라이브러리를 선행 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제도화 된다면 지적재산권법과 라이브러리 시스템의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과 과제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의 권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개념화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김형진 변호사는 공동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적재산권법상 권리 부여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동체를 정치, 생물, 인류학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박필호 변호사는 무형문화유산의 공동체를 객관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안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공동체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원모 팀장은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과 박 변호사가 제안한 공동체, 단체, 개인의 법인격 부여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가 법인격을 갖

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으나 사후적인 판결로 가능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유네스코의 목록 등재와 지적재산권

김형진 변호사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유산의 원형에 대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유산 중 보존되어야 할 표준 원형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은 김 변호사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에 앞서 유네스코 법률자문관의 말을 인용하며,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닌 보호에 대한 문제이며, 지적재산권, 저작권, 산업디자인법을 유네스코 목록 등재와 동일하게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우라 차장은 표준화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목록의 표준화에 대하여 논의한 바는 없지만 목록으로 확정하기 전까지 여러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는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목록작성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모두에게 강조하며 답변을 마쳤다.

박원모 팀장은 유네스코 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공동체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유네스코 심사위원의 판단을 상기시키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목록 등재시 공동체의 동의를 구했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주문했다.

이에 가우라 차장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합리적인 샘플을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추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체가 목록등재를 반대하는 경우 그들과 대화를 통해 이해와 설득을 구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You can't please all of the people all of the times.)”라는 영국 속담을 인용하며 답변에 대한 요지를 전했다.

»제 3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정보화 이슈

제 3부는 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최종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와 유동환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발언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법적 보호

최종호 교수는 이철남 교수의 발표 내용 가운데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와 아카이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 즉 지적재산권 보호의 대상(권리의 객체), 수혜자(권리의 주체), 보호의 방법(권리의 내용)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크게 공감한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법적 보호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 비지정문화재의 전형적인 사례인 ‘포천막걸리’의 경우, 일본에서 상표 등록을 선점하여 일본으로 수출시 ‘포천막걸리’라는 상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적 관점으로서의 해석을 요청하였다. 둘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가 소유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는 지적재산권 중 저작인격권을 중점 분야로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종합토론에서 발언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의 아카이브화와 지적재산권

유동환 교수는 1997년부터 시작된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브사업은 2000년대 중반에 와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주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번째는 초기 구축된 아카이브가 저작권이 불분명하고 두번째는 아카이브를 저작권으로 설정시 등록비가 개발비를 초과하며 세번째는 법률 시스템이 대량으로 구축되고 있는 아카이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기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철남 교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권리 관계를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대한

우수 사례로 위키피디아(Wikipedia)와 오픈소스(Open Source)를 꼽으며, 이들은 사전에 권리 관계를 명시한 라이선스 문구를 포함하므로 아카이브를 활용할 때 권리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권리 관계 정립

유동환 교수는 한의학의 상당부분이 민간지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의학연구원에서 민간의술을 데이터로 구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고광국 전문연구위원은 공유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동의보감이나 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전통지식을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비법이나 비방과 같은 사적영역을 기록 조사할 때 인센티브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간문화재 제도와 같이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해 준다면, 민간 데이터에 대한 기록 조사가 용이하고 보유자에 대한 권리 또한 존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

무형적 요소는 창작과정에서 변형되는 부분을 긍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 교수는 보존지향적인 정책보다 보존과 활용의 메커니즘을 하나의 가치 사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은정 교수가 지향하는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 전략을 정보화 및 콘텐츠화 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조 교수는 직접적인 답변보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였다. 그는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창작과 추상화에 대한 거부감은 종교적 숭고함을 폄하당한 경험에서 비롯되며, 한번 변형된 원형은 되돌릴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보존을 지향하는 그들의 입장을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불교계가 전통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 보존과 활용의 도덕적 기준이 상이하고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종합토론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 지적재산권 증진 방안

종합토론은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박 소장은 현재까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적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증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개념/용어 정리의 필요성

참가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개념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피력했다. 법적으로 권리의 객체와 주체를 설정할 때, 구체적인 개념 정리에 따라서 무엇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양대승 박사는 민속의 개념, 공동체의 범위, 대표성 등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호 교수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용어 정리가 필요하며, 이는 전문가 견해를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 것으로 기대를 했다.

조은정 교수는 무형문화재의 개념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국제적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화두를 던졌다. 또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덧붙였다.

박원모 팀장도 예능과 공예로만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개념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비해 제한된 범주에서 정의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정의 또한 제한적이라고 덧붙이며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할 때 보유자나 보존회에 대한 개념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전 세션과 마찬가지로 종합토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었다. 양대승 연구원은 공동체의 문제는 지식재산의 지리적 표시, 법인 등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로 공동체 일부가 문화유산을 등록 했을 때, 이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단체는 어떻게 처리를 해

야 될 것인가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박성용 소장은 용어정리는 2003년 협약 상에서 이미 어느 정도 되어있지만, 국내적으로도 혁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가우라 차장은 유네스코 협약에서 지적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현재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은 지적재산권상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이 충분히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지적재산권법 출범을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논의 활성화와 연구의 필요성

오기석 연구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한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대한 논의는 머지않아 정리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우리 입장에서 보호해야 할 전통문화표현물의 범위 및 수혜 대상, 왜곡 및 불법이용에 대한 침해 사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무형문화유산과 전통문화표현물의 수혜대상이 각각 공동체(*community*)와 토착민(*indigenous people*)로 대변되는데, 서로 상이한 수혜 범위를 지적하며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상호 간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그 목적이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인지 '활용'인지에 따라 구축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육소영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 분야와 법학 전문가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지금까지 본 논의가 진전될 수 없었던 것은 두 분야 간 공동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두 분야 전문가 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어떤 방식으로든 법 개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내 정책 마련

김용구 사무관은 국내적으로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 지식재산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재청도 이에 동참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유산 온라인전

수조사'사업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형문화유산을 지식재산으로 정의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가령 보유자 권리 부여 문제 및 특허 관련 문제 등을 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차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철남 교수는 포천막걸리와 교동법주를 사례로 무형문화유산의 소극적 보호와 적극적 보호 방안을 제기했다. 즉, 소극적 보호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방어적 보호 방법인데 포천막걸리를 소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도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주 교동법주와 같이 보유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이 인정한 중요 무형문화재 목록을 특허청과 공유한다면, 이중적인 특허 등록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적극적 보호는 권리 주체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교동법주를 들 수 있다. 즉, 경주 교동법주 기능보유자가 '경주 교동법주'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과 같이, 보유자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보유자 전승 제도를 운영하는 문화재청의 정책이 개별적인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와 상이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한 방안 마련

한편, 박필호 변호사는 기존의 법적 틀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호주와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으며, 우리 또한 먼저 모델법을 개발하고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추후에 논의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최종호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이드라인 혹은 모델법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폐회

박성용 소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합적이고 다원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적, 정부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소장은 아태 지역은 무수한 문명과 문화 교류의 혜택으로 풍부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선진국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박성용 소장은 이 분야의 과제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간 사회적 합의 도출, 모델법 구축과 전문가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중심은 공동체이므로 전통지식이든 전통표현물이든 결국 공동체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향후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증진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틀을 벗어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